

	<b>보도자료</b> '15.12.24보도	제공부서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
		담당자	이성운
		문의	(033)249-3800~3

## 강원도청노조 “법률이 위임하지 않은 시행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반대” 정부상대 헌법소원 심판청구

- 정부의 시대착오적 시행령 정국에 대해 정면 대응, 법치행정의 원칙을 무력화 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한 반대 투쟁 시작 -

-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성운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2015.9.25. 일자)에 의해 신설된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권(재산권, 평등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 하였다.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6조의2(성과상여금)

⑦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9.25.>

- 노조는 행자부가 공무원이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 중 부도덕한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를 특정하여 금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분배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공무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또한 대통령령에 신설된 조항(제6조의2)이 상위 법률인 지방공무원법에는 부정한 방법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어떠한 위임도 하지 않았음에도 행정청이 스스로 대통령령에 국민(공무원)의 재산권, 평등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이 침해될 가능성이

클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입법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아 이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크다고 보는 것이다.

- 사실 공공재인 공무원의 업무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개인의 재량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또한 보직과 업무분장에 따라 업무량과 범위가 결정이 되는 행정의 특성상 평가기준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업무성과를 계량화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성과평가 자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제도는 정부에 의해 강행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성과상여금이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직원의 보직이나 연공서열,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토대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차등지급 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리하여 사실상 대부분이 인정하지 않는 평가결과에 의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동료들과 공평 배분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들이 인정하지 않는 성과상여금제도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평가방법의 마련 등 제도 개선과 치유의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지급받은 급료에 대한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권마저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하려고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16개시도 노동조합(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국민(공무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의 위헌적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그 시작으로 이번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해서 12.23일 헌법제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